

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소년 수련
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

2024. 4. 8. 103



여수시 조례 제2068호

붙임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“~~이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~~” 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 · 수탁 협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수</u> <u>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</u> <u>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. <u><후단 삭제>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</u> <u>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·수</u> <u>탁 협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.</u></p>